



▶ 2006. 11. 22 배 포  
▶ 총 5 쪽

## 보도자료

▶ 산업안전팀 팀 장 강제영  
사무관 허서혁

TEL : 2110-7131 ~ 32  
E-MAIL hsh0202@hanmail.net  
FAX : 503-454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조선업체 안전관리 수준 노·사 스스로 평가한다.

- 내년부터 유해·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종에 노·사 스스로가 작업장 위험성을 평가하는 「조선업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」이 본격 도입, 시행 된다
  - 이번에 도입되는 평가방법은 안전보건 교육실태, 투자비용,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, 안전·보건조치 실태 등 56개 항목을 노사가 스스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.
  - 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▲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(총점의 90% 이상 취득)는 지도감독 면제 등 자율관리, ▲보통업체(70%~90%미만)는 예방점검 실시 등 중점관리, ▲불량업체(70%미만)는 특별감독 실시 등 특별관리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할 계획이다.
  - 현재까지는 노동부가 조선업체 재해율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타율평가 방식이었다.
- 그러나, 타율평가 방식은 사업장 자율 개선의지 저하 등 재해

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4월~6월 노·사·정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, 「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」을 마련하게 되었다.

- “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”에 따라 올 7월~10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, 우수업체가 5개소에 불과하고 보통 32개소, 불량 5개소로 나타나 아직도 조선업종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.

※ 우수업체 : 대우조선해양(주), 현대중공업(주), 현대삼호중공업(주), 삼성중공업(주), 현대미포조선(주) 등 5개소

-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“이번 자율평가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실질적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고 말했다.

- 그러나, “평가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여 자율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다발할 경우 특별 관리업체에 준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.” 덧붙였다.

[붙임1]

## 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 제도 개요

### □ 조선업 개요

#### ○ 업종의 특징

- 조선업은 철구조물, 중량물 취급 등 작업범위가 방대하고 근로자와 재료의 이동이 많은 고위험 업종으로 재해다발
- 특히, 복잡한 공정에서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고, 모기업·협력업체 근로자가 서로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며 고소·밀폐작업 등 유해·위험작업이 많아 타 업종에 비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실정

※ '05년도 주요 업종별 재해지표 비교

- 재해율(%) : 전체(0.77), 제조업(1.18), 건설업(0.75), 조선업(1.46)
- 사망만인율 : 전체(2.25), 제조업(2.13), 건설업(2.86), 조선업(2.52)

#### ○ 건조공정

- 주요 선박 건조작업은 가공공정에서 강제 전처리, 가공절단 및 성형작업 등을 거쳐 부재 제작
- 소조립 공정에서 몇 개의 부재를 서로 결합시켜 블록의 부재를 만들고, 대조립 공정으로 옮겨 블록을 조립하며 도장, 탑재 및 의장 등의 공정을 거쳐 진수

### □ 과거 평가방법상의 문제점

- 재해율, 안전보건활동 수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타율적 차등관리는 근원적 재해예방에 한계

※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, 자율 개선의지 저하요인

## □ 제도 개선내용

- 과거 재해율 위주의 실태조사를 통한 타율적 차등관리에서
  - ⇒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“조선업 자율 평가관리 프로그램”을 현장에 적용하여 노·사 자율평가 방식으로 변경
  - 영국,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 제도 도입·운영
    - ※ 영국·독일의 위험성평가제도, 미국의 자율보호제(VPP: Voluntary Protection Program), 노르웨이·스웨덴의 자율통제(IC: Internal Control)제도 운영
  - ⇒ 노·사 자율평가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촉진케 함으로써 실질적 산재예방에 기여
- 노·사 자율평가 실시후 평가등급 결정(자율, 중점, 특별)
  - 사업장에서 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
  - 정부는 사업장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되, 금년은 제도도입에 따른 평가시스템 적응성 파악을 위한 확인 실시
    - ※ 평가결과 등급관리 기준
      - 자율관리 사업장(총점의 90% 이상) : 지도점검 면제
      - 중점관리 사업장(총점의 70% ~ 90%) : 예방점검 실시
      - 특별관리 사업장(총점의 70% 미만) : 특별감독실시
  -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평가등급 통보

## □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

- 지방관서 평가 결과 통보
  - 해당 지방관서에 사업장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사후관리
- 사업장 예방점검 실시('06.10-12월)
  - 대 상 :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32개소
-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('06.10-12월)
  - 대 상 :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5개소

[붙임2]

조선업 자율 안전관리 수준평가 배점 현황

구 분	배 점	비고
총 점	800	
<b>I. 일반관리 현황</b> - 재해율, 사망만인율, 협력업체 재해율, 협력업체 사망만인율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 - 안전보건 교육실태 - 건강진단 실시현황 - 작업환경측정 결과 -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-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비용 등	330	
<b>II.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분야</b> - 안전보건관리체제 활동 - 안전관리 목표 및 세부계획 - 안전보건관리규정 -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- 협력업체간 합동안전점검 실태 - 정보교류 실태 - 산재예방 수준 격차 해소 노력 -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 지원 등	150	
<b>III. 현장위험성 평가분야</b> - 작업장 안전조치 - 추락 위험방지 조치 - 기계·기구 등의 위험예방조치 -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- 감전 위험 예방조치 - 화재·폭발등의 위험예방조치 -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- 중량물 취급실태 - 근로자 건강보호 실태 등	320	